

생성형 AI와 저작권 이슈

구창훈

KBS 지식재산권부 변호사

목차

- 1 들어가며
- 2 생성형 AI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
- 3 생성형 AI 생성물의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 가능 여부
- 4 생성형 AI의 생성물이 학습에 참고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 5 생성형 AI의 저작물 등록 및 성명표시의 문제
- 6 생성형 AI의 해외 저작권 분쟁 사례
- 7 나가며

요약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 관련 다양한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생성형 AI가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정이용 인정 여부, TDM 면책규정 도입 여부, 사적 계약을 통한 해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AI 생성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 가능한지와 AI 생성물의 타인 저작권 침해 문제, AI 생성물의 저작권 등록과 성명표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마지막으로 AI 생성물과 관련한 해외 분쟁 사례를 소개한다. 이 글이 인공지능 개발과 저작권자 보호라는 상충되는 법익이 균형을 찾아가는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1. 들어가며

바야흐로 AI의 시대다. 20년 전만 해도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닐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조만간 AI도 우리와 일상을 함께할 것이다. 아니 벌써 AI는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통신사가 제공한 AI 스피커와 대화하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 준 AI 임재범의 노래를 들으며, 자율 주행 자동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고, 업무 중 ChatGPT에게 궁금한 사실을 물어본다. 조만간 핸드폰에 AI가 탑재되면 AI는 우리의 요구에 맞춰 KTX 승차권을 구매해 주는 등 우리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할 것이다.

첫 번째 파문을 일으킨 인공지능은 2016년 3월경 이세돌을 4:1로 꺾어 우리를 충격으로 몰고 간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였다. 이후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충격과 함께 출현한 인공지능은 2022년 11월경 오픈AI가 세상에 처음 소개한 ChatGPT이다. GPT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인데, 인간이 필요로 하는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딥러닝 방식으로 ‘미리 학습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기존의 기술은 인간이 입력한 키워드가 포함된 데이터를 검색해 주는 데 그쳤지만, ChatGPT는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간의 질문에 직접 답을 생성해 줄 수 있게 되었다. 답을 생성해 내는 ChatGPT는 2가지 단계를 통해 개발되는데, 1단계로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통해 특정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게 할지에 대한 통계적 확률 예측으로 인간과 유사한 문장을 구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2단계로 인간의 질문에 대하여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활용 및 요약하여 텍스트로 구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개발된 ChatGPT는 인간의 질문에 상당한 정확도를 가진 인간의 문장으로 답을 해주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의 GPT-4 기술은 텍스트 단위를 넘어서서 시각, 청각, 감각 등 다양한 모달리티(modality : 감각에서의 유형)를 생성하는 기술로 진화하여 인간의 요구에 맞춰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대화나 정보제공의 영역을 넘어 군사, 의료, 법률 등 기술적·전문적 분야와 시, 소설, 미술, 음악, 영상, 가창 등 예술적 분야에서도 그 역할이 확대되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법률 분야에서는 개인 정보, 가짜 뉴스, 사고 발

생 시 책임 주체, 저작권 등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데, 본 글에서는 저작권 영역에 한정하여 법적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생성형 AI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

1) 공정이용 해당 여부

생성형 AI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웹 크롤링(crawling; 웹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 방식으로 수집한 후 이를 학습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행위가 수반된다. 이러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행위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해야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성형 AI의 학습을 위한 복제 및 전송행위는 컴퓨터의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일시적 복제라고 볼 수 없어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결국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그 적법성이 결정될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한 경우에 공정이용을 인정하고 있다.

공정이용 인정을 긍정하는 사람들은 ㉠ 검색 서비스에서의 썸네일 이미지 사용이 기존 저작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복제라는 이유로 이미지를 축소하여 복제 전송한 행위에 대해 변용적 이용을 인정한 법원 판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참조)과 유사하게, 생성형 AI의 학습을 위한 복제, 전송도 정보 검색을 넘어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생성이라는 패

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이용자에게 새로운 통찰과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이며, 학습 자체는 별도의 표현행위가 아니어서,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은 변용적 이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 ㉠ 생성형 AI의 개발은 역사의 필연적인 방향인데 데이터 학습을 위해 모든 저작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은 기술 발전에 커다란 저해를 초래하는 점, ㉡ 저작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의 크롤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이용 방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는 매우 방대하여 특정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점, ㉣ 기존에는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도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정이용 인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주체는 대부분 영리단체이거나,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영리적 이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 특정 저작자의 이야기체, 그림체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기도 하여, 해당 영역에서는 기존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점, ㉢ 옵트아웃(OPT-OUT) 방식¹⁾으로 자신의 저작물의 크롤링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동의 없는 크롤링을 소극적으로 적법하게 하지는 않는 점, ㉣ 기존 저작물을 학습한 생성형 AI는 유사한 저작물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되어, AI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습과정에서의 저작물의 복제, 전송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공정이용 이외의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위에서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전송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공정이용 조항이 모든 나라에 도입된 것은 아니다. EU나 일본은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이 없고, 영국이나 캐나다는 공정이용 보다 적용 범위가 좁은 공정취급 조항이 있으며, 미국, 한국, 싱가포르는 공정이용 조항이 있다. 한편 공정이용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이용 조항의 일반성·추상성 때문에 법원의 구체적 판단이 쌓이기 전까지는

1) 당사자가 자신의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때 정보수집이 금지되는 제도

법적 불안정성이 여전하다.

이에 법적 안정성 하에서 데이터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는 측에서는, 저작권법에 TDM 면책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적 방법이나 특정 저작물 또는 데이터 권리자와의 사적 계약을 통해 법적 불안정성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1) TDM 면책규정 도입 관련 검토

TDM이란 ‘Text and Data Mining’의 약자로 방대한 텍스트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정한 패턴을 분석하고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을 위해 TDM에 대해 면책규정을 도입하지는 움직임이 있다.

미국은 별도의 TDM 면책규정을 도입하지 않고 공정이용 조항으로 해결을 피하고 있지만, 공정이용 조항이 없는 일본과 유럽은 TDM 면책규정을 입법적으로 도입하였다. 물론 싱가포르처럼 공정이용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DM 면책규정을 도입한 나라도 있다. 각국의 구체적인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제43조(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함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 ② 제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은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

2) 류시원, “저작권법상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규정 도입 방향의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1호 (2023.1.) 참고

3) ①서적 등에 포함된 대량의 정보 중에서 필요한 요소를 추출해 일정한 특징이나 경향 등을 찾아내는 해석의 결과를 제공하는 행위, ②특정 정보에 대한 평판이 게재된 블로그, 신문, 잡지 등의 내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그와 함께 블로그 등의 일부분을 제공하는 행위, ③대량의 논문이나 서적을 디지털화하여 검증 대상 논문과의 문장 일치도를 해석하는 표절 정보제공 서비스에서 표절된 논문의 일부분을 제공하는 행위 등

유럽연합의 경우 이원적 규제를 도입하였는데,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관의 학술연구 목적의 TDM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로도 우회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서의 면책을 규정한 반면, 이외의 TDM(상업적 이용 포함)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되 계약 및 옵트아웃에 의한 적용 배제의 길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TDM 면책규정을 도입하였다.

일본의 경우, 저작물의 본래적 이용은 저작물의 사상과 감정을 향수하는 것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TDM에 대해서는 상업적 목적을 불문하고 면책할 뿐만 아니라, 경미한 정보해석³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는 약간의 사상을 향수하더라도 면책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싱가포르의 인공지능이 미래의 가장 큰 성장산업이라는 국가적 AI 전략에 따라 법적 안정성 하에 AI 개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이용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주체의 제한 없이 TDM 면책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입법을 참고하여 도종환 의원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 43조를 발의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의 경우 ㉠ 기존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조항을 통해 생성형 AI 개발자와 저작권자의 법익 균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점, ㉡ 관련 논의가 무리 없이 익지 않은 현시점에서 서로의 갈등을 키우면서까지 TDM 면책규정을 도입하기보다는,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관련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구체적 해법과 비전을 담아 입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점, ㉢ TDM 면책규정은 공정이용 조항이 없는 나라에서 주로 입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 TDM 면책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판단된다.

(2) 사적 계약을 통한 해결 노력

학습과정에서의 복제·전송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TDM 면책규정까지 없는 상황에서, 생성형 AI 개발자가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데이터의 권리자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최근 네이버는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출시하였는데, 데이터 학습과 관련하여 뉴스콘텐츠 권리자들을 상대로 기존 약관에 의한 적법한 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네이버의 언론사 제휴 약관(이하 ‘네이버 제휴 약관’) 제8조 제3항은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사전에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개발을 위한 학습은 위 규정상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목적의 정보 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1]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X’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2023.02.27.)

그러나 ㉠ 네이버 제휴 약관 제1조가 “이 약관은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가 제공자(제2조 제8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하 동일)의 제공 정보를 네이버 뉴스 서비스 등에서 이용자에게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에 있어 네이버와 제공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네이버 제휴 약관은 언론사가 제공한 정보 즉 뉴스콘텐츠를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서 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지, 뉴스콘텐츠의 노출과 무관하고 오히려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대체할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학습에의 사용에 관한 것이 아닌 점,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5조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령 문언의 해석상 뜻이 명백하지 않아 새로운 서비스에 생성형 AI 서비스가 포함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고객인 언론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네이버 제휴 약관 제8조 제3항의 새로운 서비스에 생성형 AI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약관법에 부합하는 점, ㉠ 약관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네이버 제휴 약관 제8조 제3항의 ‘새로운 서비스’에 언론사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없고, 오히려 뉴스콘텐츠 기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어 언론사에 손해가 예상되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개발이 포함된 내용이었다면, 이는 언론사에 매우 중요한 계약 내용이므로, 네이버가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어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네이버 제휴 약관 제8조 제3항이 학습과정에서의 언론사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네이버와 같이 생성형 AI 개발을 하려는 자는 적법한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 학습과정에 사용한 뉴스콘텐츠 권리자들과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개별적인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3. 생성형 AI 생성물의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 가능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간’의 창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검정짧은꼬리원숭이인 나루토가 찍은 ‘웃는 원숭이 셀카 사진’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물성이 부인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의 생성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창작과정이 인간의 통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인간의 창의성이 작품에

[그림 2] 나루토가 찍은 ‘웃는 원숭이 셀카 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개입되어 있어야 한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인 호모 파베르는 창작과정에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왔는데, 도구의 사용과 관련하여 어디까지 인간의 창작성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것이다.

사진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에도 과연 사진을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이 촬영자의 통제 범위에서 이루어져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진 저작물로 인정하게 되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창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수 조영남이 무명 화가를 고용하여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조영남과 대작 화가의 관계에서 조영남의 통제 범위 내에서 그림이 제작되었다면 조영남의 창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정인이 생성형 AI를 도구로 사용하여 작품을 만든 경우에도 생성물의 제작과정이 특정인의 통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생성물에 특정인의 사상과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로 그 저작물성이 결정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성형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 등을 추출하고 유용한 정보 및 표현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특정인이 생성형 AI에게 일정한 명령어 즉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특정인은 단순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롬프트로 입력하였을 뿐 그 생성물의 제작과정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때의 AI 생성물은 프롬프트 입력자의 저작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AI를 사용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인데, 향후 생성형 AI의 제작과정부터 출력과정에 이르기까지 예술가의 통제 가능성이 커진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인간이 생성형 AI를 도구로 생성물을 만든 이후, 이를 기초로 자신의 사상

과 감정을 추가하여 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통해 어문, 음악, 미술 등을 만든 이후 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창작하는 형태인데, 심지어 인간이 만화의 글을 쓰고 이를 기초로 생성형 AI에게 그림을 그리게 해서 만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⁴ 이런 경우 저작권법의 원칙에 입각하여 AI 생성물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부인되겠지만, 이후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추가한 창작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4. 생성형 AI의 생성물이 학습에 참고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AI 생성물에 대한 타인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의거성 및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의해 판단하면 된다. 학습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임이 확인된다면 의거성은 인정될 것이지만, 실질적 유사성은 각 생성물과 참고한 저작물과의 구체적·개별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생성물에 대한 타인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게 될 생성형 AI의 특성상 해당 AI를 사용한 제3자뿐만 아니라 그 생성물을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까지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생성형 AI의 생성물이 학습에 참고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최근 생성형 AI의 생성물을 저작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한 행정청을 상

4) 미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USCO)이 2022년 9월 15일 크리스 카슈타노바가 미드저니를 사용해 만든 18페이지 분량의 만화 '새벽의 자리아'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승인했다가 10월 28일 다시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는데, 이 만화는 카슈타노바가 글을 쓰고 미드저니 AI에 그림을 그리게 하여 만들어졌다.

대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생성물의 저작물성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성명표시 및 AI 생성물임을 밝힐 의무 여부와 관련하여도 문제 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성형 AI의 생성물은 저작물성이 부인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생성물 자체의 저작권 등록이 거부되는 건 비교적 명확하다. 더구나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성물 자체를 등록하면서 AI의 생성물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성명으로 등록 및 공표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한편 AI 생성물을 활용하여 새롭게 만든 저작물의 등록의 경우에는 간단치 않다. 생성물에 추가적으로 자신의 사상과 감정의 창조적 표현 형식을 더한 경우 이 부분은 저작물로 인정될 것이므로 저작물 등록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때 AI 생성물을 활용한 것임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로 성명표시를 하여 등록 및 공표하는 것이 가능할까? 현재 저작권 등록시스템 하에서는 공유 저작물 또는 저작물성이 없는 콘텐츠를 활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에 비추어 보면, AI 생성물을 활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밝힐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위해서 제3자들이 저작자의 창작 부분과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면, 입법적으로는 AI 생성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6. 생성형 AI의 해외 저작권 분쟁 사례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는 초기 논의 단계여서 아직 확립된 법원의 판결이 없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 분쟁 사례는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해줄 것이므로 주요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본다.

<게티이미지 vs 스테이블 디퓨전>

세계 주요 스톡 이미지 기업 게티이미지는 인공지능 사진 생성 도구 ‘스테이블 디퓨전’의 개발사 스테빌리티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게티이미지는 자신의 워터마크가 노출된 스테이블 디퓨전의 이미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스테빌리티AI가 게티이미지가 보유한 1,200만 개 이상의 스톡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1조 8,000억 달러가량(한화 약 2,268조 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vs 오픈AI>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ChatGPT에게 어떤 뉴스를 학습에 사용하냐고 물었더니 ChatGPT가 월스트리트 저널, 가디언,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등을 이용해서 학습한다고 답하였고, 이후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픈AI와 뉴스콘텐츠 사용료에 대해 협상 진행 중이다. 참고로 최근 오픈AI는 AP통신과 개별 계약을 맺었다.

<뉴욕타임스 vs 오픈AI>

최근 오픈 AI는 뉴욕타임스와 뉴스콘텐츠 사용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되었고, 이에 뉴욕타임스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참고로 구글은 유료 구독 매체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스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왕좌의 게임 작가 등 vs 오픈AI>

미국의 인기 드라마 시리즈 ‘왕좌의 게임’ 원작자인 조지 R.R. 마틴을 포함한 존 그리샴, 마이클 코넬리 등 유명 작가들이 Chat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텐센트 vs 인션⁵⁾>

텐센트 기업은 작문을 보조해 주는 인공지능 ‘드림라이터’를 만들었고 이를 활용하여 주식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인션 기업이 이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였고 이에 텐센트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심 법원은 “기사의 내용은 당일 오전 관련 주식 시장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선택, 분석 및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인 구조와 명확한 표현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창의성을 구비하고 있고, 이 사건 기사의 생성 과정으로부터 분석하여 볼 때 기사의 표현 형식은 원고의 창작팀 구성원의 개인적인 배열 및 선택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표현 형식은 일정 정도 독창성을 가진다”라며 AI 생성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7. 나가며

인공지능의 발전과 일상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가져다줄 사회적 편익의 뒤편에는, 일자리 상실의 경제적 문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을 대신하는 윤리적 문제, 개인정보 악용과 같은 법적 문제, 인간의 의존성 증가로 인한 인간의 지적 능력 퇴화 문제 등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저작권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위험이 있다. 인공지능이 고도화하여 인간의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더 뛰어난 생성물을 만들어 내게 되면, 조만간 AI 생성물이 인간의 저작물을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창작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고, 인공지능은 더 이상의 발전된 저작물을 추가 학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창조적 문화 수준을 정체시키거나 오히려 퇴보시킬 것이 명확하다.

5) 이 판결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판결로 중국 선천시 난산구 법원(广东省深圳市南山区人民法院)에서 2019. 12. 24. 1심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2020년 초에 확정되었다.

유발 하라리 등 유수의 저명 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인류에 초래할 위협을 경고하며 인공지능 개발의 일시적 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외눈박이처럼 인공지능이 가져다줄 밝은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초래할 어두운 면에 대한 보다 냉철한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저작권법 영역에서도 저작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와 저작권 이용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저작권자와 AI 개발사가 상생하는 시대가 오기를 희망한다.